

정책토론회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로운 성장동력 될 수 있나

| 일 시 | 2016년 10월2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 회 순 ————■

## 사 회

- 노 부 호 (서강대 명예교수)

## 주 제 발 표

- 정 주 호 (송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 토 론

- 이 영 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 김 광 용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 김 종 완 (우리FIS 상임고문)

## 질의·응답

## 폐 회





## ■————— 목 차 —————■

### 주 제 발 표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 정 주 호 (송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 토 론

-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1)  
- 이 영 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2)  
- 김 광 용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3)  
- 김 종 완 (우리FIS 상임고문)





<정책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

# 주제발표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정 주 호  
송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 1. 들어가며

- 한국금융의 혁신적인 은행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연말 출범을 앞둠.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준비법인(이하 카카오뱅크)과 K뱅크준비법인(이하 K뱅크)은 올 11월 중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가가 확정되는 데로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sup>1)</sup>를 이용한 혁신적 금융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시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은산분리규제 중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 의결권 지분의 4%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상 은산분리규제
-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용기술이 필수적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의 중심이 되는 IT기업 입장에서는 동일인 지 분한도를 규제하는 은행법에 따라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후 필요한 추가투자에 대해서 자본증자 및 추가투자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1)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서 금융과 IT를 융합해 간편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도 핀테크에 포함된다.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목적에 대해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활용, 이용자 수요 충족 및 금융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현재 K뱅크의 지분율과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볼 때 KT나 카카오는 단순한 지분 참여수준으로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금융·IT융합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실적으로 금융사 대주주가 주도하고 KT나 카카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음.
- 동일인 지분한도를 제한하는 은산분리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서 공표한 정책상 목적달성과 본인가를 받게 될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목적 실현하고 그에 따른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2.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미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 등 전자채널을 주요 채널로 하는 은행의 한 형태로서 물리적 지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은행 업무가 진행되나 금융상품(대출, 투자 등)에 따라 고객입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상담하고 직접 거래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순수 온라인 채널로만 고객을 대면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창구의 개설도 필요함.

구분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	2세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주체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자동차, 유통	포털, SNS, 전자상거래, 벤처기업
핵심 채널	PC+유선인터넷	모바일+무선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모기업 또는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한 대출 및 예금, 계좌이체 등의 업무가 중심	차별화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O2O 서비스와 연계, in-app payment 등), 대안적 신용평가(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 이용), 비대면 본인인증(생체 인증 등)
주요사례	Egg Bank(영국), Charles Schwab Bank(미국), Sony Bank(일본) 등	Fidor Bank(독일), Hello Bank!(프랑스), Moven(미국), WeBank(중국)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 영업채널로 하여 금융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당은행의 모든 거래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인터넷·모바일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기존 은행 (Traditional Bank)	인터넷 전문은행 (Internet Primary Bank)
대면 채널	· 점포(Branch) : 핵심채널, 창구 중심의 영업 - 최근 들어 점포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 - 국내은행의 경우 1년 새 270여 개 점포 축소	· 점포(Branch) : 기본적으로 없음 - 고객 서비스 차원(고객센터 등)에서 최소한의 점포 운영
비대면 채널	· 콜센터(전화) · ATM(자동금융거래단말기) · 온라인 banking(인터넷/모바일)	· 온라인 banking(인터넷/모바일) : 핵심채널 · 콜센터(전화) · ATM(자동금융거래단말기) - 제휴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ATM망을 활용하거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ATM 보유
금융 서비스	·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는 은행마다 다름 - 대체로 소매금융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 - 지정 및 인건비 비용 감소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운영 시간	· 점포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 24시간 365일

### 3.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

-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운영으로 기존 점포 운영에 비해 비용절감효과가 높아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나 이자를 기존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은행의 금융서비스 가격 인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은행 간의 가격경쟁구도는 은행 산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금융소비자의 만족 증진
  - \* 유사한 사례로, 온라인 증권회사인 키움증권은 최저 거래 수수료를 내세우며 현재 시장 점유율 약 8%로 온라인 부문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경쟁사들의 수수료 인하경쟁을 촉발
-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기존 시중은행 또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끊임없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함.
- 이러한 상호 경쟁은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은행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ICT 기술은 물론 이와 연관된 유관산업의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쟁력있는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은행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까지도 기대가능

#### 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국내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 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포함.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국내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TF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ICT·금융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의 목적아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ICT기업 등의 진입을 허용하고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에서 50%로 상향하여 조정
  -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현재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하여 향후 다양한 업무개발이 가능하였으며, 다만 규제로서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
  - \*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하향조정
- 자본규제와 영업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의 제약요인이었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
- 종전 대면(face-to-face)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실명확인 방법을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2)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가능하도록 허용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경우 1단계로 현행 은행법체계 하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1~2개 인가, 2단계로 은행법을 개정될 경우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29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한국카카오은행 준비법인’과 ‘K뱅크은행 준비법인’에 대하여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

**【표 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현황**

신청인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자본금	3,000억 원	2,500억 원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핵심제공 서비스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카드·VAN·PG 없는 간편 결제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토탈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Real-time 스마트해외송금

## 5.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 (1) 미국

-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은행 금융기관과 제조업체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참여, 1995년 10월 세계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2000년 초반까지 30개 내외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고<sup>3)</sup>, 도입 초기 IT붐에 힘입어 새로운 금융거래의 주류를 형성할 듯하였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및 기술력으로 인하여 고객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이후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타 금융기관에 인 수·합병
-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정비용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

2) ①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을 토대로 상기 4가지 방식 중 2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확인하는(Multi-check)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강서진,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KB 지식 비타민 14-73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9. 24, 2면

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비용 투입했고 이는 영업초기 재무상태악화로 이어져 설립 2년 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

\*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산업자본)이 설립을 주도, 미국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찰스슈왑뱅크(Charles Schwab Bank)와 이트레이드(E\*Trade)는 온라인증권사가 설립하였고, 앨리뱅크(Ally Bank)와 비엠더블유뱅크(BMW Bank)는 자동차제조업체인 GM과 BMW가 주도하였으며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와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전략으로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일부 선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기 시작

o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는 신용카드 결제 업무로서 신용카드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연동해 결제·이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 디스커버뱅크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레스뱅크 등이 대표적

→ 이들 은행은 지난 2013년 기준 각각 24억4000만 달러, 18억 70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 국내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신한은행이 같은 해 벌어들인 1조 7199억 원보다도 약 50%가량 높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기기 전까지 이 수익은 고객들의 결제은행 몫이었으나 이 은행들은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주택관리비, 주유비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에 주목, 이 비용을 신용카드 자동 결제로 연결해 은행의 고정 수입 창구를 확대하여 예대사업보다는 일찌감치 수수료 수익에 초점

## (2) 일본

o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가이드라인(2000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 8개 은행이 영업 중<sup>4)</sup>, 주로 비금융기업(소니, 야후, 이토요카도 등)과 은행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하였으며,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달한 나라로서 비금융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전자회사인 소니가 지난 2001년 세운 소니뱅크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초기 시장 선점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로 자산관리 중심의 풀 बैं킹 서비스를 시작.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수입이 전체의 약 72%.

→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Rakuten)은 라쿠텐뱅크(Rakuten

4) 문병순,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5. 5, 46면.

Bank)를 만들어 송금수수료를 없애는 등 파격적인 서비스로 기존 시중 은행들과 차별화. 일본의 송금수수료는 건당 300엔이상으로 높아 라쿠텐뱅크의 저가수수료 정책은 충분한 가격경쟁력으로 작용, 여기에 모기업과의 각종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공유해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의 자회사 쿠텐뱅크는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전자화폐 등의 지급결제업무에 특화하며 성장

→ ‘편의점 은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세븐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유통회사인 이토요카도와 세븐일레본이 합작해 만들. 이 은행은 세븐일레본 매 장마다 설치돼 있는 ATM기를 활용해 각종 공과금 수납과 예금, 대출,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 2000년 이후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속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향상을 시현, 2014년 3월 기준으로 총예금 9.4조 엔, 총대출 2.8조 엔을 기록, 2006년 대비 4배 이상 증가(전체 상업은행 대비 각각 1.4%, 0.5%수준), 영업이익 368억엔으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영업이익 흑자실현

【표 2】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현황

(단위: 억엔)

은행명	설립일	개업일	자본금	직원수	현재 주요 주주
재팬네트은행	2000.9	2000.10	373(억엔)	287(명)	스미토모미쓰이은행 41.2%, 야후 41.2%
세븐은행	2001.4	2001.5	305	438	세븐일레본 38.1%, 기관투자자(펀드)
소니은행	2001.4	2001.6	310	413	소니파이낸셜홀딩스* 100.0% * 소니 60.0%
라쿠텐은행	2000.1	2001.7	260	482	라쿠텐(楽天)* 100.0% * Mikitani Hiroshi 13.2%, 기관투자자(펀드)
SBI주신네트은행	2006.4	2007.9	310	289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 50.0%, SBI홀딩스 50.0%
이온은행	2006.5	2007.10	513	185	이온파이낸셜서비스* 100.0% * 이온 41.2%
지분은행	2006.5	2008.6	350	864	KDDI 50.0%, BTMU 50.0%
다이와넥스트은행	2010.4	2011.4	500	101	다이와증권그룹 100.0%

### (3) 중국

-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기득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변화와 자금 배분 효율화 목표. 중국 내에서 민간 중소기업은 중국 GDP의 60%, 신규 일자리의 73%를 창출하나 대형 은행들로부터 대출 받기 어려움. 이는 대형 은행들이 준고정금리제 하에서 국유기업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출영역을 영위해 왔기 때문임.
  - 중국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민간으로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추구
  
-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설립, 중국의 첫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WeBank)는 텐센트(Tencent)<sup>5)</sup>가 주도하여 2014년 7월에 설립 허가하였으며, 위뱅크는 기존의 대출을 받지 못한 개인, 기업의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1월 4일에 공식 서비스를 시작
  
-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의 강점은 모기업의 인터넷 플랫폼 고객으로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관건이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있음.
  -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모기업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수 억 명의 고객 정보를 통해 경쟁력 확보
  
- 텐센트가 만든 위뱅크는 온라인 메신저 'QQ(사용자 8억명)'나 모바일 메신저 '위챗(사용자 4억명)' 등을 이용해 신용 등급을 결정
  - 사용자들의 로그인 시간과 가상계좌 내 자산, 게임활동 내역, 온라인 구매, 송금 내역 등이 분석 대상으로 이를 통해 일반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중·저신용 고객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 상품인 '웨이리 타이'를 판매하고 있음. 안면 인식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보완
  
-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도 대출·신용·보험·결제시스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마이뱅크는 알리바바의 인터넷상거래 구매 내역 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들에게 최대 500만 위안(약 9억 원)까지 대출

5) 텐센트는 게임 서비스를 주 종목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 메신저, 게임 등 각종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IT회사다.

→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해 2010년 이후 16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4,000억 위안(약 7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높은 성장세 유지

#### (4) 유럽

- 유럽의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영국에 설립된 에그뱅크(Egg Banking)으로 보험사 푸르덴셜(Prudential)이 설립, 이후 EU의 경제통합으로 국가별 영업 기반을 두었던 은행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며 2002년 중반 35개까지 증가
- 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업체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성행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①EU경제통합으로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을 이용 ②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
  
- 유럽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험계약자의 만기보험금을 내부 유보하는 형태로 발전한 탓에 서비스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환경을 영업에 활용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
- 네덜란드 ING의 인터넷전문은행 ING다이렉트는 ‘제로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며 고객유치, 본업인 보험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
- 스웨덴 최대 보험사 스칸디아의 스칸디아뱅크는 ‘올 인 원 계좌’라는 일종의 통합 계좌서비스를 만들어 하나의 저축예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주식거래,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한번에 이뤄지게 만들어 편의성 강화

## 6. 은산분리규제<sup>6)</sup>와 인터넷전문은행

### (1)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

#### 가. 은행 소유 제한

- 1950년 은행법 제정 이전에는 은행은 정부 소유로 출발, 1950년 5월 은행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이 없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소유가 가능
  -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로 인한 부작용으로 1961년 6월 정부는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모두 환수하여 은행을 국유화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10%로 제한함. 이는 정 부지배하에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소수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방지가 목적
  
- 1998년 외환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 필요에 따라 외국인에 한해 10%까지 완화 하되 10%, 25%, 33%를 초과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은행법을 개정 하였음. 2002년 개정된 은행법은 동일인 취득한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비금융주 력자 지분한도를 처음 도입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기존 4% 제한 유지, 이에 따 라 동일인 취득한도는 4%에서 10%로 완화하되 10%, 25%, 33%를 초과할 때 금융위 승인 필요
  - 산업자본이 아니라면 승인을 얻어 10%는 물론 33%를 초과해 지분 취득 가능
  
- 2009년 개정 시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가 4%에서 9%로 완화되었으며, 2013년 개정에는 다시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은행법 개정
  - 다만 4%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 까지 보유가능<sup>7)</sup>
  
- 2013년 개정에는 다시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4%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

6)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 원칙

7) 이러한 입법배경에는 2009년 은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으나 재벌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과 은행의 사금고화, 이행상충문제, 대주주인 기업부실의 은행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

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할 수 있음.

#### 나. 대주주 규제

- 대주주에 대한 규제 제도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소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배경이 되는 제도로서 은행법상 대주주는 은행법 제2조1항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지방은행은 15% 이상) 보유한 주주와 4% 초과 보유 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
- 은행법에서는 적격성심사, 신용공여 제한, 지분증권 취득 제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두어 대주주에 의해 불공정하거나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있는 행위에 대해 차단장치 마련
- 은행법 제16조의4 1항에서는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한 주주 등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역할

#### 다. 출자제한 규제

-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을 15%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은행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의 회사 등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의결권의 15%를 초과하여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한 업종을 살펴보면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이 포함.
- 지분증권 소유 제한은 건전성 규제의 한 수단으로 자금의 고정화를 막고 다른 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 (2) 주요국의 은산분리규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제도

### 가. 미국

-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함.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 기업은 회원은행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만 존재
  -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만 있어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다수 존재
  - \* 1799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해튼사(Manhattan Company)가 맨해튼 사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와 1954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한 사례 등
-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 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과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미국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 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경우 특정한 면허나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 은행과 동일한 인가기준이 적용되되, 규제당국은 금융 안정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위험요소를 추가로 검토한 뒤 인가여부를 결정

### 나. 일본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은행의 계열기업 주식보유가 금지되었으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새로운 기업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과 기업 간에 상호 주식보유를 비롯한 거래관계가 심화
  - 1964년 OECD가입으로 자본 자유화가 예정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 위협 대비 및 1960년대 초반에 지속된 증권시장 불황의 대책으로 일본공동증권주식회사 와 일본 증권 보유조합이 구입·동결한 기업주식의 대부분을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계열금융기관에 매각, 은행과 기업의 상호주식보유비율 증가

- 주거래은행과 거래기업은 이와 같은 자본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임원의 겸임이나 파견, 거래관계 등을 상호지배력 행사하는 동시에 서로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있음.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특정기업주식의 5%(보험회사는 10%)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그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 필요
-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공급 확보, 주거래은행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공급자 및 대주주로서 이들 기업의 경영과 투자 계획에 대한 지도 및 감시기능 및 차입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경우 경영재편지원 등의 기능 수행
-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금융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이른바 선단식 체제를 구축하여 이와 같은 효과를 극대화
-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 2000년대 초반 지속적인 경제침체과정에서 약화된 금융 증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설립을 허용, 2000년 8월 '기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 업무에 대한면허 심사·감독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 일본 금융청은 사업을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및 모회사의 사업위험 차단 필요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비즈니스모델이 가지는 특수성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면허심사 및 감독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 일본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금융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나 비금융기업이 은행지분(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을 5% 이상 매입 시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함. 20% 이상 매입 시에는 금융당국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
- 최저자본금은 20억 엔 이상을 유지하도록 은행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율하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기존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 다. 유럽

- 자본요구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s IV,이하 CRD IV)에서도 산업 자본에 대한 은행 소유규제는 없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신용기관(은행)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적격보유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의 감독당국에게 보유하고자 하는 지분 규모를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 필요
- 적격투자자가 어떤 은행 등 신용기관의 의결권 또는 지분의 20%, 30%,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또는 신용기관이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되도록 지분을 보유하여 신용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에게 이 사실을 통지
  
- EU에서는 미국처럼 기존의 법률 체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없이 기존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율
  
- EU에서 적용되는 은행설립 관련 법령으로는 자본요구법령(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이하 CRR), CRD IV 및 자본요구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이하 CRD)이 있으며, 각 회원국에서는 위 지침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 가능
- \* CRD 또는 CRD IV에 따라 유럽 은행은 다른 사업자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초기자본은 최소 500만 유로(EUR)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좋은 평판 및 지식, 기술, 경험이 있는 자가 은행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경영진의 평판 및 경험치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감독당국은 다른 국가의 감독당국과 협의할 수 있음.
  
- 최소 10%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은행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분을 보유하는 자(이하 적격보유자)는 해당 은행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에 적합한 자이어야 함.
- 적격보유자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감독당국은 다른 나라의 감독당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은행이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 규모 그리고 복잡성에 비례하는 지배구조,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 건전한 행정 및 회계 절차 등을 위한 적합한 기관 및 자원을 보유해야 함

### (3) 검토

#### 가. 쟁점

- 현행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은산규제완화 여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 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신동우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
- 20대 국회 개원이후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IT 기업을 포함한 비금융 회사의 인터넷전문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칭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
-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지급결제 업무 등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형식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sup>8)</sup>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예금 및 대출 업무를 기존 일반은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은산분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sup>9)</sup> 대립

#### 나. 은산분리유지 관점

-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할 경우 고객과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문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저해, 경제력 집중 및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은행자본이 고객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써 대주주와 고객 간의 이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의 이해에 따라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참여하면서 금융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은행자본을 지배하는 소수

8) 맹수석,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학술대회 발표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학술대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5. 8. 17, 46면.

9) 고동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가능성에 따른 은행산업의 과제”, 금융 vol.730, 전국은행연합회, 2015. 01, 9면.

의 산업자본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은산결합은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함. 은행은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기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시장기능이 작용하여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되고 부실한 계열기업들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도태되지 않고 공정경쟁이 저해됨으로써 시장질서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다. 은산분리완화관점

- 재벌의 사금고화 및 관련된 부작용 내지 위험으로 인식되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는 은행감독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 등에 의하여 상당한 통제장치 확보
- 예를 들어 각종 여수신 등 업무규제,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규제 등이 있으며,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 일본에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여 금산분리의 통제를 하고 있지 않음.
- 금융의 국제화, 융합화 및 대형화는 세계 일류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자본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졌고, 잉여현금이 많은 상태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길도 많으므로 과거와 같은 불순한 의도로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sup>10)</sup>

---

10)원동욱, “금산분리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 :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하여”, 상사판례연구 제 26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9., 167면.

#### (4) 소결

-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산업자본의 흐름을 유동성 있게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중임.
-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 지배는 금지되어 있지만 ILC의 인가를 받아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 가능
- 일본은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해있는 특별 조항이 없으며,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00년에 금융청에서 내린 명시적인 인가지침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비즈니스 모델
- \* 일본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로 정의하여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하며<sup>11)</sup>,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규제의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요주주에 대한 통제장치로 은행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5%로 규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은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 완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음. 다만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할 대책 마련 필요
-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주요국의 사례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산분리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지분보유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주체의 출현을 유도가 필요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대기업의 경제력 집

11) 일본은행법 제2조 제9항; 일본은행법 제52조의9 제1항

중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은행법 내에서 은산분리완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방지장치가 마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기업의 참여하는 것도 검토 가능

- 특히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안 마련 가능

## 7. 개선방안

### (1) 은행소유제한 완화

-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할 필요, 다만 금산분리유지 입장에서 제기하는 완화시의 부작용 즉 은행의 사금고화, 대주주의 리스크 전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제외 필요함.
- 2015년 금융위원회의 추진계획 및 은행법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ICT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이 안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 장기적으로는 진입단계에서의 심사,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은행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도 고려 필요

### (2) 인가제도 보완

- 우리나라는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 진입 규제, 이에 따라 금산분리규제 완화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은행업의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 활용
- 은행업의 인가는 행정법학상의 특허로서 정부가 은행업을 영위할 권리 설정,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 국가들은 금융감독당국에 은행업 인가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인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및 발전 추구

- 현행 은행법도 인가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고, 인가 시 조건의 부과와 그 조건의 취소 및 변경 절차 규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폭넓게 재량권 부여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일반은행을 동일하게 인가 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대면영업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인가를 할 경우, 사업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인가 조건으로 하여 금융안정성 강화
  - 사업계획 심사 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
- 현행 금융위원회의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경우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부작용우려는 상당부분 해소 가능

### (3)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

- 금산분리규제의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필요, 현재 은행법은 제35조의2 제1항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 \*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발행 주식도 자기자본의 1% 한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 제4항에서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은행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현행 은행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금산분리규제 완화로 인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될 경우 이러한 제한을 더 엄격히 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은행법에서 기업그룹 거액신용공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한도규제를 하면서 은행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15% 한도 규제
- 우리 은행법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하여 현행 자기 자본의 1% 이내인 부분을 변경해 금지시키는 것도 검토 필요<sup>12)</sup>

## 8. 결론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특성상 산업자본 즉 ICT기업이 주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법인은 K뱅크의 경우 ICT기업인 KT, 카카오뱅크의 경우 ICT기업인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참여
- 각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확보한 은행지분율은 K뱅크의 KT 8%,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10%에 불과하며 이는 현행 은행법(16조2)의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KT와 카카오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어 10%까지 지분소유가능. 이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4%에 불과, 은행법상 금산분리법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자본금 2,500억 원과 3,000억 원 수준으로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초기 영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나,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법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ICT기업 상황 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규모 자본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없는 상태
- ICT기업이 주도하지 못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혁신적 결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금융 중심의 기존 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산분리규제에 대한 제도적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
- 세계 주요국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은행업 혁신에서 찾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은행업을 쇄신하고자 인터넷전

12) 조정래, 앞의 연구보고서, 30면.

문은행을 도입하였고, 중국 정부 역시 ICT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설립을 지원하며 국영은행 중심의 은행산업에 혁신을 추진함.

- 우리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sup>13)</sup>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산 분리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물론, ICT기업이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은산분리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하여 ICT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이 적극적으로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더불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통해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는 국내 금융소비자에게는 수준 높은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고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질과 규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과 동등한 경쟁을 갖추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하는 것이 필요

---

13)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로 언어나 문화 제약이 적어 은행업 해외진출에 용이하다. 금융 후진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다른 국가들이 선점하기 전에 국내 경쟁력을 키워 해외 금융 침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정책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

# 토론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1)

이 영 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은 고비용의 투자와 장기간 적자를 감내하면서 각종 장애와 보안사고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정보유출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되는 파급력은 매우 높으므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보안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의 경직된 금융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취약점을 갖고 있다.

■ **IT 보안 취약점:**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채널에 의해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해당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좌개설부터 입출금 계좌이체 해외송금 대출 등 모든 영업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기존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체계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다만 전자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에 걸맞는 다양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IT부문에서의 보안취약점의 유형에 따라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운용:** 무점포 또는 소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금융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스마트폰이나 자동화기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시스템에 의존도가 높고 정보유출이나 해킹은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취약점이다.

■ **빅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조기탐지시스템 구축:**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어 영업을 개시하는 단계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정보가 요구되는 FDS를 구축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FD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입고객이 있어야 하며 고객의 프로필과 이용하는 PC단말기와 스마트기기 정보, 상품가입 정보, 거래 내용과 과거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수집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에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타 금융회사 또는 제휴 기관과 공유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사기 행위 정보들도 프로파일화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거래를 판단하고 금융사기로 예상되는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개인 이력 정보와 사용자의 환경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고객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구축한 FDS에서 적발한 사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체제 구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비대면 금융거래에 따른 생체인증 및 신기술에 있어서의 보안:**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인증 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그 나름 장점과 활용상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를 안고 있으며 관련 기기상의 오류에 의한 불신이 야기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초래 및 이용 거부감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체 정보 복원을 통한 해킹 등 보안문제가 여전히 이슈가될 전망이다. 고가의 장치 비용과 전자서명법과 같은 추가적인 법제도 충돌사항이 내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인증을 비롯하여 다수의 신기술은 실제 서비스 적용에 앞서 객관적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모바일 운영체제 보안 강화:**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이전에 인터넷전문은행은 반드시 모바일 운영체제 보안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애플리케이션 위변조나 접근통제 등 세부적인 모바일 보안기술을 적용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사항으로 다양한 모바일 위협요소들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침해사고나 해킹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하여 설립 초기부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기관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과 엄격한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의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과 보안취약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생체정보, 금융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한층 더 강화된 IT보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

에 대한 우려 불식이 가장 큰 과제일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는 일찌감치 구시대적인 제도의 산물이라고 본다.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3)

김 종 완  
우리FIS 상임고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 예외적용의 문제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야 획기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그간 시중은행들만의 리그에 안주해온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일대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세계 속의 글로벌 은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실 2015년 초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방침이 발표되고 ICT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신설은행의 허가계획이 발표될 때 많은 이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메기효과를 가져와 진정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사실이며 지금도 그러한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있는 듯하다.

사실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은행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안으로 비춰졌으며 상당수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지금도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 일부 대기업과 IT, 보안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움직임이 있었고, 2007년 MB정부 출범전 대통령 선거공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설립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설립이 본격화 되었다.

어쩌면 2001년이나, 2007년쯤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차별화되고 편리하며 가격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지만 2016년, 지금의 시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현격한 차별화(가격경쟁력을 제외하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시장의 여건이 그

리 만만하지가 않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계획이 발표되면서 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전에 이미 모바일뱅킹 강화전략을 통해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제휴, 지원, 인수 합병 등의 과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못지않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디지털금융 성숙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형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모바일뱅킹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화전략이 제대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과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해 과연 그간 공고히 견지해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금지해온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새로운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그 영업의 본질은 은행이며 단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채널만을 이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은행과 특별히 차별을 두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은행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시너지를 기존 금융 시장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 없이 그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은산분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이미 정부가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국민 앞에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획기적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층 더 나은 금융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은산분리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려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신설 허가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신기술도입을 바탕으로 기존 시중은행들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연쇄적인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의 도미노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은산분리의 원칙

을 적용해야하고(왜 더욱더 엄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가지만...) 기존의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적용을 논의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빠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해 그간 지켜온 은산분리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은행법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나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국민의 금융편익제고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금쯤은 은산분리에 대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논의를 함께 국민공론의 장으로 올려놓은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나 이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을 통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